



■■■■ KIEM REPORT - 해설

위탁·위임·대행의 개념 구별

법령의 정의와 법제처 법령해석례 230건으로 본 구별 기준

작성	위탁관리 본부장
검수	연구소장
www.kiem.re.kr	

요약

세 개념의 구별 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공공부문에서 **위탁·위임·대행**은 자주 혼용됨. 계약서에는 「위탁」이라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대행에
가깝고, 조례는 「위임」이라 하면서 민간에 맡기는 경우도 있음. 셋은 **명義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르므로, 이름을 잘못 붙이면 처분의 효력과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달라짐.

일반 규정의 세 정의

대행은 개별 법령·조례에 산재

위임·위탁 일반을 규율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위임·위탁·민간위탁**
셋을 정의하며, **이 규정과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대행」의 정의는 없음**. 개별 법령과 조례가 각자
정의를 두므로, 대행이라는 말을 만나면 그 법령이 명義와 책임을 어디에 두었는지 조문으로
확인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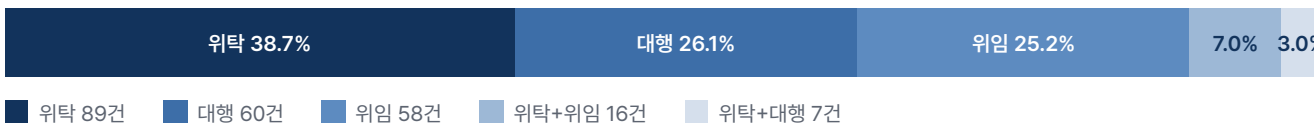
최다 쟁점, 위탁

법제처 법령해석례 230건

본 연구소가 정리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230건**에서 쟁점 유형은 위탁 38.7%, 대행 26.1%, 위임
25.2%임. 정의가 없는 **대행이 위임과 비슷한 규모로** 다툼을 만들고, 두 개념이 겹쳐 어느 쪽인지
자체가 질의 대상이 된 사안도 23건(10.0%)임. 이름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이 보고서가 이름이 아니라 **명義와 책임**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앞세우는 까닭임.

분석 대상 해석례	법령 정의	일반 규정에 정의 없음	가장 많은 쟁점
230건	3가지	대행	위탁 38.7%

그림 1. 쟁점 유형별 구성 (n=230)



자료: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본 연구소가 분류. 조회일 2026년 8월 12일

보고서 핵심

이름이 아니라 **조문이 명義와 책임을 어디에 두었는지**로 판별하는 방법과, 사무를 맡기는 문서를 검토할 때 확인할 여섯 가지를
정리함.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항별 구조와 제168조 사무위탁의 요건, 대행 규정을 확인하는 순서, 문서 유형별 확인
지점과 정비 순서를 함께 실었음. 본문의 II·III장은 정의 조문과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를, IV장은 대행의 지위를, V장은 해석례
분포를, VI장은 실무 점검 순서를 다룸. 인용한 조문은 모두 시행일을 밝혀 두었으므로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활용하기 바람.

I. 구별이 문제가 되는 까닭

01 이름과 실질이 어긋나는 지점

의미의 혼동

행정사무를 남에게 맡기는 방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음. 그런데 실무 문서에서 쓰이는 이름과 그 문서가 실제로 만들어 낸 법률관계가 자주 어긋남. 다음과 같은 장면이 반복됨.

계약서 제목은 「**민간위탁 협약서**」인데 조문을 보면 처분과 고지가 모두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음. 명의를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실질은 대행에 가까움. 반대로 조례는 「**위임**」이라 쓰면서 상대방이 민간 법인인 경우도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임이 아니라 민간위탁임.

용어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것이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닌 이유는,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임**.

표 1. 명칭 오기의 영향

구분	어긋났을 때 생기는 문제
처분의 효력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 되면 그 효력이 다투어짐. 명의를 누구에게 있는지가 곧 처분청이 누구인지의 문제임
불복의 상대방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청구인과 피고를 누구로 할지가 달라짐
배상 책임	사무 처리 과정의 위법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가 달라짐

자료: 본 연구소 정리

왜 혼동되는가?

혼동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음. **첫째, 일반 정의를 둔 법령이 하나뿐임**. 그 밖에서는 각 법령이 용어를 골라 쓰면서 뜻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둘째, 「위탁」이 총칭처럼 쓰임**. 예산·계약 실무에서 사무를 맡기는 일을 통틀어 위탁이라 부르는 관행이 있음. **셋째, 한 사업 안에 여러 갈래가 섞임**. 운영은 민간에 맡기고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하면, 하나의 협약서에 민간위탁과 대행의 성격이 함께 담김.

보고서의 범위

법령·조례 문언에 한정

이 보고서는 **법령과 조례가 문언으로 정해 둔 것을** 정리하고,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 실제로 어느 지점이 다투어졌는지를 확인한 것임. 개별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그 사무의 근거 법령과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달려 있으므로, 여기에서 정리한 기준은 **1차 판별의 틀**로 보아야 함.

II. 법령의 정의

02 법령이 정의한 세 가지

세 가지 정의

대통령령 제2조

일반적인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임. 이 조문은 위임·위탁·민간위탁 세 가지만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2026. 7. 1. 시행)

정의 개념의 핵심

세 정의를 가르는 것은 **받는 쪽이 누구인가**임. 조직 안쪽(보조기관·하급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위임, 그 밖의 다른 행정기관이면 위탁, 민간이면 민간위탁임. 셋 모두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또는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라고 명시하고 있음.

표 2. 세 개념의 상대방과 책임 귀속

구분	맡는 상대방	명義와 책임
위임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받는 쪽으로 넘어감
위탁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받는 쪽으로 넘어감
민간위탁	법인·단체·그 기관·개인	받는 쪽으로 넘어감

자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같은 조 제4호·제5호는 부르는 이름도 정해 두었음. 위임하는 쪽이 **위임기관**, 받는 쪽이 **수임기관**이고, 위탁하는 쪽이 **위탁기관**, 받는 쪽이 **수탁기관**임. 민간이 받은 경우도 수탁기관으로 부름.

II. 법령의 정의 (계속)

03 맡길 수 있는 사무의 한계

직접 시행 사무 제외

같은 규정 제3조제1항

같은 규정 제3조는 위임·위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사무, 정책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가운데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위임·위탁한다고 되어 있음.

같은 조 제2항·제3항은 절차 의무도 두었음. 위임·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단순한 사무가 아닌 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함.

민간위탁 대상의 한계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민간위탁은 대상이 한 번 더 좁아짐. 제11조제1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네 가지 유형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2026. 7. 1. 시행)

즉 위임·위탁보다 민간위탁의 **문턱이 높음**. 어떤 사무를 민간에 맡기려 할 때는 「맡길 수 있는가」를 먼저 통과해야 하고, 그 관문이 **권리·의무와의 직접 관련성**임.

선정과 감독의 규정

같은 규정 제12조·제14조

제12조는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를 종합 검토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정함이 없으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제14조는 위탁기관의 **지휘·감독권**을 정함.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이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감독의 근거를 계약서에 옮겨 적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때에 취소·정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협약서를 만들 때 이 조문을 그대로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함.

III. 지방자치단체의 근거

04 제117조의 세 갈래

항까지 적어야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임. 항이 갈릴 뿐 하나의 조문이어서, 실무에서 몇 항인지를 빼고 「제117조에 따라」라고만 적으면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음.

표 3.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항별 구조

항	내용	상대방
제1항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제2항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제3항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개인
제4항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위탁하려면 원래 기관장의 승인	—

자료: 「지방자치법」 제117조 (2026. 7. 1. 시행)

실무에서 갈리는 세 가지

첫째, 제3항에는 대상 사무의 한계가 붙어 있음.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라고 되어 있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1항·제2항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대통령령 제11조제1항이 국가사무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관문이 지방사무에도 놓여 있는 것임.

둘째, 모든 항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요구함. 근거 자치법규 없이 계약만으로 맡길 수 없음. 실무에서 위탁 근거 조례를 먼저 정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셋째, 재위임·재위탁은 사전 승인 사항임. 수탁기관이 받은 사무를 하도급처럼 다시 넘기는 것은 제4항의 승인 대상임. 많은 자치단체 조례가 재위탁 금지 조항을 따로 두는 이유임. 다만 사무 자체를 넘기는 것과 그 사무를 처리하려고 물품·용역을 사는 것은 다르므로, 재위탁인지 아닌지는 맡긴 사무의 처리 자체가 넘어갔는지로 가림.

III. 지방자치단체의 근거 (계속)

05 지자체 상호 간 사무위탁의 별도 근거

제117조가 아니라 제168조

지방자치법 제168조

조문 제목에 「위탁」이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가 아님.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맡기는 것은 제117조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68조(사무의 위탁)**가 근거임.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8조 (2026. 7. 1. 시행)

규약에 담을 다섯 가지

제168조제3항은 규약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계약서가 아니라 **규약**이고, 협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는 점이 민간위탁과 크게 다름.

표 4. 사무위탁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

호	내용
제1호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제2호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제3호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제4호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제5호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자료: 「지방자치법」 제168조제3항

변경·해지할 때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제4항). 사무가 위탁되면 그 사무의 관리·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됨(제5항).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만 예외임.

IV. 일반 규정에 정의가 없는 대행

06 일반 규정에 없는 정의

두 일반 규정에 없는 정의

앞의 두 법령 어디에도 **대행의 정의는 없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대행을 다루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도 등장하지 않음. 대행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흩어져 있는 개념**임.

정의를 직접 내려 둔 자치법규

전라남도 조례 제2조
2025. 12. 4. 시행

정의를 직접 내려 둔 자치법규가 있음.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는 제2조에서 둘을 나란히 정의함(전라남도는 2026. 7. 1. 통합으로 폐지,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지역에 계속 적용됨).

「위탁」이란 ...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대행」이란 ...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2조 (2025. 12. 4. 시행)

여기에 구별의 핵심이 드러남. **위탁은 명의로와 책임이 넘어가고, 대행은 넘어가지 않음**. 대행기관은 사실상의 실행을 맡을 뿐임.

법령마다 다른 대행

다만 이것은 **해당 조례가 스스로 내린 정의**이며, 일반 규정에 정의가 없다는 것은 곧 **개별 법령의 해석에 맡겨져 있음**을 뜻함.

그 법령 안의 답

표 5. 개별 법령의 「대행」을 읽는 순서

순서	확인 지점	확인 사항
1	정의 조항	그 법령·조례가 대행을 따로 정의했는지. 정의가 있으면 그 문언이 우선함
2	권한 행사 조항	대행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위하는지. 원래 기관 명이라면 대행, 대행자 명이라면 실질은 위탁에 가까움
3	책임·감독 조항	위법이 있을 때 책임이 어디로 귀속 되는지, 원래 기관의 지휘·감독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IV. 일반 규정에 정의가 없는 대행 (계속)

07 명義와 책임이라는 판별 기준

이름이 아니라 조문으로 판별 이름이 아니라 조문이 명義와 책임을 어디에 두었는지로 판별하는 것이 안전함. 앞서 본 정의를 하나의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음.

표 6. 명義·책임 귀속에 따른 판별표

구분	대외적 명義	책임 귀속	일반 근거
위임	받은 쪽	받은 쪽	행정권한 규정 제2조제1호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제2항
위탁	받은 쪽	받은 쪽	행정권한 규정 제2조제2호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민간위탁	받은 쪽	받은 쪽	행정권한 규정 제2조제3호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자체 간 사무위탁	받은 쪽	받은 쪽	지방자치법 제168조 (규약·고시)
대행	맡긴 쪽	맡긴 쪽	일반 정의 없음 — 개별 법령·조례

자료: 각 법령·조례 조문을 본 연구소가 정리

실무 유의

「제117조제2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위탁」과 「제168조의 사무위탁」은 서로 다른 조문임. 문서에 「사무위탁」이라 적혀 있으면 제168조인지, 제117조제2항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며, 제168조라면 규약과 고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판별 순서

표를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읽힘. 첫 번째 갈림길은 명義임. 대외적으로 나가는 명義가 맡긴 쪽이면 그 자체로 대행 계열임. 명義가 넘어갔다면 두 번째 갈림길은 상대방임. 조직 안쪽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위임(기관위임), 그 밖의 다른 행정기관이면 위탁, 민간이면 민간위탁, 지자체 상호 간이면 제168조 사무위탁임. 이 순서는 문서 제목이 아니라 조문과 계약 내용에 적용됨.

V. 법령해석례 230건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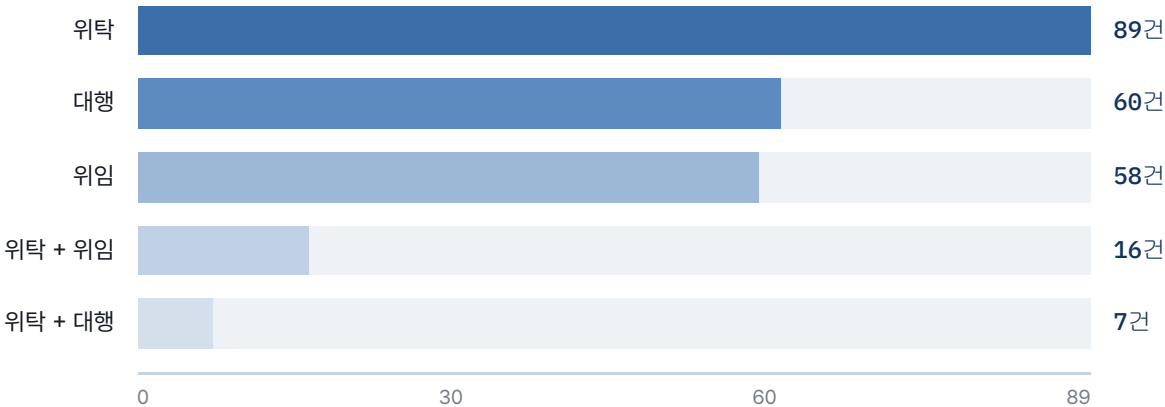
08 쟁점 유형별 분포

303건에서 230건으로

법제처 법령해석례
조회일 2026. 8. 12.

본 연구소는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 위탁·위임·대행이 쟁점이 된 사안을 추려 **230건**을 정리하였음. 검색 결과 303건에서 중복 회신과 「신탁법」상 「위탁자」 오탐을 걸러 남긴 것임.

그림 2. 쟁점 유형별 건수 (n=230)



자료: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본 연구소가 분류. 조회일 2026년 8월 12일

표 7. 쟁점 유형별 분포와 주된 다툼

쟁점 유형	건수	비중	주요 쟁점
위탁	89	38.7%	위탁이 가능한 사무인지, 수탁자의 자격 범위
대행	60	26.1%	대행이 허용되는지, 대행자의 자격·등록요건
위임	58	25.2%	위임의 범위, 조례·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 한계
위탁 + 위임	16	7.0%	두 개념이 겹쳐 어느 쪽인지가 쟁점인 사안
위탁 + 대행	7	3.0%	같은 사무를 위탁으로 볼지 대행으로 볼지
계	230	100%	—

자료: 같음

V. 법령해석례 230건의 분포 (계속)

09 분포의 세 가지 함의

정의가 없는 개념이 26.1%

첫째, 대행이 26.1%로 적지 않음. 두 일반 규정에 정의가 없는 개념인데도 위임(25.2%)과 사실상 같은 규모로 다툼이 생김. 정의가 법령마다 다르니 해석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앞서 본 대로 대행은 개별 법령·조례가 각자 정의하므로, 질의자는 「이 법령의 대행이 무엇을 뜻하는가」부터 확인하여야 하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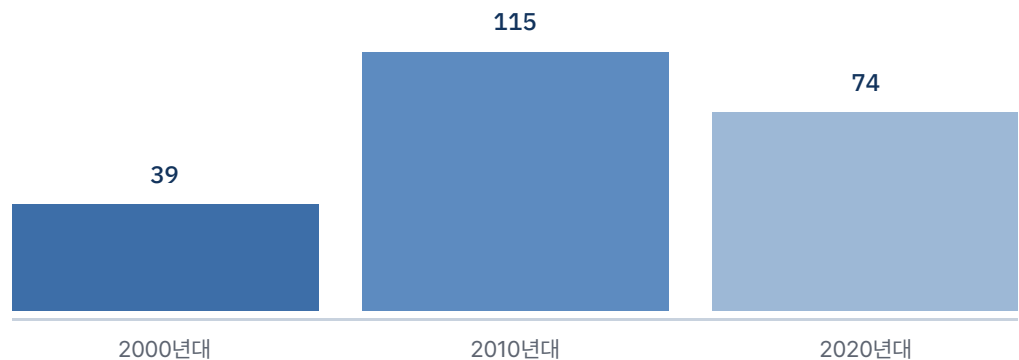
경계 사안이 10.0%

둘째, 두 개념이 겹치는 사안이 23건(10.0%)임. 「위탁인가 위임인가」, 「위탁인가 대행인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질의의 대상이 된 경우임. **이름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 보고서가 명 의와 책임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앞세우는 이유임.

지금도 이어지는 쟁점

셋째, 시기별로 보면 정리되고 끝난 쟁점이 아님. 회신 시기로 보면 2000년대 39건, 2010년대 115건, 2020년대 74건(미상 2건 별도)임. 2020년대는 아직 진행 중인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생 빈도가 줄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림 3. 회신 시기별 건수



자료: 같음. 2020년대는 2026년 8월까지의 집계로 아직 진행 중인 구간임

용어 혼동의 실례

「신탁법」상 위탁자 8건

검색 과정에서 「신탁법」상 「**위탁자**」에 관한 해석례 8건이 함께 걸렸음. 행정사무의 위탁과는 전혀 다른 영역임. **같은 글자를 쓴다고 같은 제도가 아님을** 보여 줌.

분포의 함의

세 가지를 묶으면 다툼은 **정의가 없거나 정의를 넘어선 지점**에서 생김. 그러므로 확인할 것은 **문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 문서가 명 의와 책임을 어디에 두었는지**이며, 다음 장은 그 순서를 정리한 것임.

VI. 실무 점검

10 문서 검토의 여섯 단계

여섯 가지 확인 순서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름과 실질이 어긋나는 것을** 걸러낼 수 있음.

1	근거 조항을 항까지 적었는가	「제117조」가 아니라 「 제117조제3항 」까지 적어야 무엇을 한 것인지 특정됨
2	받는 쪽이 누구인가	안쪽·지자체장이면 위임, 다른 행정기관이면 위탁, 민간이면 민간위탁, 지자체 간이면 제168조 사무위탁임
3	명목이 누구인가	처분·고지·증표가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지 를 봄. 맡긴 쪽 이름이면 대행에 가까움
4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제117조제3항의 민간위탁 대상이 아님
5	근거 조례·규칙이 있는가	모든 항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요구함
6	다시 맡기는 것은 아닌가	재위임·재위탁은 원래 기관장의 사전 승인 이 필요함 (제117조제4항)

민간위탁의 추가 확인

대통령령 제12조·제14조

민간위탁으로 정리되었다면 선정과 감독 절차까지 갖추어졌는지 함께 확인함.

선정 — 다른 법령에 정함이 없으면 **공개모집**이 원칙임. 인력·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검토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봄.

감독 — 지휘·감독과 보고 요구의 근거가 계약에 들어가 있는지,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봄. 계약 위반으로 해제·해지할 때는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재위탁은 별도 관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이 **재위탁**임. 수탁기관이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은 **원래 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함.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재위탁은 계약 위반이 되고, 앞서 본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사무 자체를 넘기는 것과 물품·용역을 사는 것은** 구분됨.

VI. 실무 점검 (계속)

11 문서 유형별 확인 지점

검토의 공통 출발점

검토 대상이 조례인지 협약서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지점이 다름. 다만 어느 경우든 **명의를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임.

표 8. 문서 유형별 확인 지점

문서	확인 지점
조례·규칙	근거 조항(제117조 몇 항), 대상 사무 범위, 재위탁 금지, 선정 절차
협약서·계약서	처분·고지·증표의 명의 , 책임과 배상 조항, 지휘·감독 조항, 해지 사유와 절차
고시·공고	공개모집 여부, 자격 제한을 두었다면 그 근거
지자체 간 규약	제168조제3항의 다섯 가지 기재사항, 협의와 고시 를 거쳤는지

자료: 본 연구소 정리

정비의 두 갈래

이름과 실질이 어긋난 것을 발견했을 때 선택지는 둘임. **이름을 실질에 맞추거나, 실질을 이름에 맞추거나**임.

명의를 맡긴 쪽에 두어야 한다면 이름을 대행으로 바로잡고 근거 규정을 갖추어야 함.

민간위탁으로 가려면 **대상 사무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지**부터 다시 보아야 하고, 근거 조례와 선정 절차를 정비하여야 함. **어느 쪽이든 문서 제목만 바꾸어서는 해결되지 않음.**

정비 순서

표 9. 정비 순서

순서	대상	할 일
1	근거 자치법규	근거 조·항 확정, 대상 사무 범위와 재위탁 금지를 반영
2	공고·선정 절차	공개모집 여부와 심사 기준을 정비
3	협약서·계약서	명의·책임·지휘감독·해지 조항을 정리
4	사무 처리 실무	처분·고지·증표 명의를 문서와 일치

VI. 실무 점검 (계속)

12 주의가 필요한 표기

조문 확인 대상

다음 표기가 있는 문서는 반드시 근거 조문을 확인하여야 함. 이름과 실질이 어긋나는 사례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걸러짐.

표 10. 주의가 필요한 표기

문서에 적힌 표기	점검 항목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몇 항인지. 항에 따라 상대방과 대상 사무의 한계가 달라짐
「사무위탁」	제168조의 지자체 간 사무위탁인지, 제117조제2항의 위임·위탁인지
「위임」인데 상대방이 민간	정의상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임이 아님. 민간위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지
「민간위탁」인데 명의를 지자체	명의를 넘어가지 않았다면 실질은 대행임. 근거 규정이 맞는지
근거 조례 없이 협약서만 있음	제117조는 모든 항에서 조례·규칙을 요구함
수탁기관이 다시 업체를 씀	사무 자체의 재위탁인지 물품·용역 구매인지. 재위탁이면 사전 승인이 있는지
「대행」인데 정의 조항이 없음	그 법령이 명 의와 책임을 어디에 두었는지. 표 5의 순서로 확인

자료: 본 연구소 정리

용어 정리

행정권한 규정 제2조
제4호·제5호, 제12조제1항

표 11. 이 보고서에서 쓴 용어

용어	뜻
위임기관·수임기관	사무를 위임하는 쪽과 위임을 받는 쪽
위탁기관·수탁기관	사무를 위탁하는 쪽과 위탁을 받는 쪽. 민간이 받은 경우도 수탁기관으로 부름
민간수탁기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근거와 한계

인용한 법령·조례

표 12. 이 보고서가 인용한 근거

법령·조례	조문	시행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조·제3조·제11조· 제12조·제14조	2026. 7. 1.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68조	2026. 7. 1.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전라남도 폐지 후 특별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중)	제2조	2025. 12. 4.

조회일 2026년 8월 2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 자료

법제처 법령해석례 **230건** (2026년 8월 12일 조회 기준).

이 보고서의 한계

유의 사항

이 보고서는 **법령과 조례의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만**을 정리한 것임. 판례와 유권해석의 축적된 논의는 다루지 않았음.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해당 사무의 근거 법령과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특히 **대행**은 두 일반 규정에 정의가 없어 법령마다 뜻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보고서에 인용한 전라남도 조례(현재는 경과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적용 중)의 정의를 다른 법령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

문의

이 보고서의 내용이나 개별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www.kiem.re.kr 로 문의바랍니다.